

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모집 공고

우리 구에서는 「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수행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8일

광주광역시 남구청장

1 위촉분야 및 인원

○ 주요업무 : 고충민원 조사·처리 및 위원회 안건 심의(권고·의견표명)

구분	모집분야	세부 분야 (자격 요건)	모집인원	위촉기간
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•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	2명	4년 (단임)
	전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	1명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	1명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	1명	

- ※ 전문분야 중 지원자(적격자)가 없는 세부 분야가 있는 경우, 다른 세부 분야 지원자 중에서 합격 결정된 자를 제외한 최고득점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.
- ※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적용

2 지원 자격 및 요건

- 가. 「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위원회의 결격사유) 및 같은 조례 제6조(겸직금지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
- 나.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2) 판사 ·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- 3)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
 - 4) 건축사 · 세무사 · 공인회계사 · 기술사 ·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※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「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적용

※ 사회단체의 범위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

〈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위원회의 결격사유)〉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별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정당의 당원
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

〈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겸직 금지)〉

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
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
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
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

3

직무내용

-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·처리
- 위원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
- 다수인민원, 공공갈등 민원,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
합의, 조정, 시정권고, 의견표명 등 처리
-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, 조정 등 처리
-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
연례보고서 제출

- 위원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 요구
-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-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
4

위촉신분 및 활동비

- 위촉신분 : 위촉직(비공무원)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수행
 - 위원별 주 1일 근무 / 주 5시간 근무(비상근) 예정 / 월1회 대면회의
※근무일(횟수) 및 근무시간은 관련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.
- 활동비
 - 「광주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수당)에 의거

5

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1. 6.(목) ~ 11.10.(월) [3일간]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 - (방문) 남구청 7층 감사담당관
※휴일(토·일요일) 제외
※근무시간(09:00~17:00) 내 직접 방문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(이메일) syj0712@korea.kr
※이메일 신청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(수신 확인 및 누락 방지)
※제목에 [시민고충처리위원 지원서] 기재 (2025.11.10.(월) 17:00 수신분까지 유효)
※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PDF파일로 첨부
- 제출서류
 - 1) 지원서 1부 (※시민사회단체 추천의 경우, 추천서 및 지원서 제출)
 - 2) 자기소개서 1부
 - 3) 직무수행계획서 1부
 - 4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- 5)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 1부
 - 6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 - 7) 비당원 확인서 1부
- 8))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지원서 등은 광주 남구 홈페이지(www.namgu.gwangju.kr)에서 내려받아 사용
※모든 제출서류(면허 · 자격증 제외)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

6 심사방법

-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심사
 -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일정 개별 통보
- 2차 면접심사 : 적격요건 심사
 -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, 전문성,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구의회 동의 절차 : 위촉 동의안 심의 및 의결
※ 「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광주 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최종 위촉
- 합격자 발표 : 광주 남구 홈페이지(www.namgu.gwangju.kr) 공고 및 개별 통지

7 유의사항

-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원서 제출 요망
- 지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(지원서상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)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
-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를 위조 ·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
-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 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함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해석에 따름

☞ 문의 : 남구청 감사담당관 (고충민원팀) 062-607-2223